

충청북도다가구주택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폐지조례(안)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1년 12월 21일

나. 회부일자 : 1991년 12월 23일

3. 제안이유

- 불균일과세에 관한 규정을 지방세법시행령에 반영하므로서 본조례의 실효성이 상실

4. 주요골자

- 건축물 연면적 660제곱미터(200평)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고급주택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

5. 검토의견

-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3 제1항 제2호(1)목의 규정에 의하면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,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은 고급주택으로서 취득세의 일반세율(100분의 20)의 100분의 75으로 하여 일반건물의 7.5배를 초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나
- 1세대가 구분독립하여 사용하는 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로 건축된 다가구주택이라는 전체 건축물연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로서 지방세법시행

령 제84조의3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범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고급주택에서 제외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를 하여왔음.

- 그러나 다가구주택에 대한 불균일과세 규정이 '92년부터 시행될 지방세법 시행령에 반영계획으로써 본조례는 그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충청북도다가구주택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